

#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) 수립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주택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19.03 ~ 2021.11		
사업내용	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전부개정(2018.2.9. 시행)에 따라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지관리를 위한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)을 수립하고자 함		
사업비 (당해년도)	300,000천원	(국비)	(시비)30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재생실	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	진경식 2133-7190	진경은 2133-7205	이원규 2133-7206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(x-) 0
계	(x-) 0	(x-) 300,000	(x-) 300,000	(x-) 0
시설비	(x-) 0	(x-) 300,000	(x-) 300,000	(x-) 0

#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
시설비	○ 기술용역비(1차연도) 300,000,000원	=	300,000천원

### 3 사업설명

- 사업목적
 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전부개정(2018.2.9. 시행)에 따라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지관리를 위한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)을 수립하고자 함
- 사업근거
 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
- 사업내용
  - 사업기간 : 2019. 3. ~ 2021. 11.(33개월)
  - 추진방법 : 용역발주
  - - 2030서울생활권계획과 기본계획의 주거생활권계획 정합성 확보
    -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에 따른 용적률 체계 반영
    - 기본계획 고시 후 관련법 및 제도변화, 도시재생 정책환경변화 반영
  - 총사업비 : 800,000,000원
- 추진경위
  - 2017. 2. 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전부개정 공포(2018. 2. 9. 시행)

#### 2019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00,000	
용역 발주 및 시행	2019.03~2019.12	300,000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전부개정(2018.2.9. 시행)에 따라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지관리를 위한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)으로 개정된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를 위한 용역 시행

## 4 사업 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
2017년도	
2018년도	○ - 2018.10.4. : 2030 도시?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안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) - 2018.10.10. : 기승용역 타당성심사(적정)

### □ 향후 기대효과

-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부문별계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) 수립